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2624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6017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262469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명진, 유가희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1.

주문

1. 가. 피고 B과 D(E생)사이엔 2019. 8. 2.자로 체결한 14,500,000 의 증여계약 및 2019. 8. 16.자로 체결한 3,2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과 D 사이에 2019. 8. 2.자로 체결한 8,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F은 2017. 5. 4.자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하여, D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합11호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 30. 위 법원으로부터 ‘D 및 G 등은 공동하여 F에게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F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9나65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8. F의 항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F을 상대로 받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1904호, 2019차1220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타채749호로, “F이 D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9나65호 매매대금 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정본에 의하여 가지는 청구권 전부 및 종된 권리 중 청구금액 4억 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채무초과

건설사업을 하던 H는 2019. 8.경 아래와 같은 각 송금행위 당시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다. 인적관계

D는 1991. 2. 4. I과 혼인하였다가 2019. 1. 30. 이혼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라. D의 자녀들에 대한 금원 송금행위

D는 자신의 우체국금융계좌(계좌번호 ① 생략)에서 2019. 8. 2. 금 92,5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② 생략)에 14,500,000원을 송금하고, 자녀인 피고 C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③ 생략)에 8,000,000원을 송금하고, D의 계좌에서 피고 B에게 같은 달 16. 3,2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에 이체하여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B이 아버지인 D로부터 2019. 8. 2. 1,450만 원, 2019. 8. 16. 320만 원을 각 증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그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을 하나, 당사자의 인적 관계, 위 증여 당시 D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D의 피고 B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에게 대여해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자녀인 피고 C에게 2019. 8. 12.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금전을 무상 공여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D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돈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병원 중인 아버지 D의 병원비 등을 수회 대신 지출하고, 소액의 돈을 몇 차례 대여하였으며, D가 피고 C에게 이러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가 피고 C에게 2019. 8. 12. 800만 원을 증여한 것인지 본다.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병원 중인 D를 위해 카드로 병원비 등을 수회 대신 결제하거나, 소액의 현금을 D에게 송금하기도 한 사실, 2019. 2.경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위와 같이 병원비를 대신 지출하거나, D에게 송금해 준 돈이 대략 1,000만 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2019. 8. 12.경 C에게 송금해 준 위 돈 800만 원에 관하여 D와 C 사이에 그 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송금된 금전이 대신 결제한 병원비 등 비용의 상환, 대여금 변제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일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보건대, 피고가 D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D가 피고 C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러한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연미